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275 저작권침해금지 등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힐
담당변호사 심수진
변 론 종 결 2026. 6. 18.
판 결 선 고 2026.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별지1 기재 각 로고 저작물 및 별지2 기재 각 저작물의 디지털 파일 및 이를 복제·변환·저장한 파일을 제3자에게 제공·교부·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별지1 기재 각 로고 저작물 및 별지2 기재 각 저작물을 복제·공중송신·전시·게시의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허락·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디자인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축산물 유통업, 축산물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포항시 북구 D에 본점을 두고 그 사업(이하 '피고의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25. 6. 2. 위 사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로고 제작 및 피고의 상표권 등록

1) 원고는 2019. 9.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사업을 위한 로고 디자인의 제작을 의뢰받아 오른쪽 표시와 같은 로고 (이하 '이 사건 로고'라 하고, 이 사건 로고 제작을 위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계약을 위한 로고디자인 의뢰서(갑 제3호증)의 필독사항에는 '저작권은 결재대금 완납시 B에게 제공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뢰서 하단에는 계약 일정, 사용 용도, 작업 비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항목	내용
일정	11월 15일까지 작업 완료
작업 사이즈	CI, 어플리케이션



사용 용도	상표권 등록	
작업 비용	심볼 + 타이포 = 시그니처type 작업 HY(한양폰트) 기업용 CI, BI 라이선스 어플리케이션 적용안	70만 원(부가세 별도) 저작권 승계 (C → B)

2) 원고는 2019. 11.경 이 사건 로고 제작을 완료하고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작업 비용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E일자 이 사건 로고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원 테두리의 꽃문양과 오른쪽에 있는 'F' 한글 표기 부분을 결합한 표장을 상표로 출원하여 G일자 그 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홍보물의 제작·제공

원고는 2020. 10.경부터 2024. 7.경까지 피고의 의뢰로 별지2 목록 각 이미지(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홍보물'이라 한다)를 제작하고, 피고에게 완성된 결과물 혹은 검토용 시안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로고에 대한 저작권등록

원고는 H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F'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로고를 미술저작물(로고), 창작일 및 공표일 I일자로 하는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10, 1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25. 6. 2. 위 법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던 사업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마치고



영업활동을 중단한바, 그 이후로 이 사건 로고 등과 이 사건 홍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더 이상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허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실체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장차 상대방이 부작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작위를 명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등으로 부작위의무 위반 상태를 중지 또는 제거하기 위한 소이다. 따라서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상대방의 부작위의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미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장차 위반할 개연성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22, 27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가 설립 이후부터 2025. 6. 2.까지 축산물 유통업, 축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마쳤더라도 위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인격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 ② 피고의 대표이사 모친인 J가 피고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로고 및 이 사건 홍보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로고 등과 이 사건 홍보물을 제공 및 그 사용을 허락하였거나 장차 이 사건 로고 등과 이 사건 홍보물의 제공 및 그 사용을 허락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러한 침해행위를 금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로고 등과 이 사건 홍보물을 창작한 저작권자로서, 피고에게 위 각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사용을 허락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J에게 위 각 저작물을 제공하거나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그에 따라 J가 'F 정육점'의 영업을 위하여 위 각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일한 침해가 반복·확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상표권 등록을 위하여 이 사건 로고의 디자인 작업을 의뢰할 당시, '저작권 승계'를 조건으로 정하였기는 하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추가로 의뢰한 작업비용(이 사건 로고가 들어간 제품 디자인)을 정산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로고에 관한 저작권 승계가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권과 복제권·배포권·공중송신권·전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홍보물에 관하여도,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홍보물의 의뢰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그 사용을 허락한 것일 뿐,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3자에 대해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고, 그중 일부는 피고와의 협의 과정에서 검토용으로 제공한 이미지로서 피고에게도 그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외에 2019. 1.경부터 2025. 2. 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로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홍보물의 제작을 맡겨왔고, 이 사건 로고 및 이 사건 홍보물



제작 및 이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하는 대가로 2019.경부터 2025.경까지 합계 615,838,116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로고 및 이 사건 홍보물에 대한 저작권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로고 및 이 사건 홍보물이 각각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고, 원고가 그 저작권자임을 전제로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로고 중 원 테두리 내부에 꽃을 형상화한 문양(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한다)은 출산하지 않은 암소를 뜻하는 미경산 한우의 여성성을 꽃으로 상징화하여 절정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창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고 있고 그 특성이 다른 기존 작품과 구별될 수 있으며, 이 사건 도안의 디자인이 이용된 물품의 실용적 기능과 분리 인식될 수 있고, 그 밖의 다른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이 사건 로고 중 이 사건 도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이 사건 홍보물은 각 그 자체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의 주장을 저작권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도안을 사용한 이 사건 로고 및 이 사건 홍보물의 활용을 금지하는 취지로 선택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이 사건 도안을 포함한 이 사건 로고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제공하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저작권을 피고에게 모두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도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로고 및 이 사건 홍보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뿐만 아니라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다2974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로고 중 이 사건 도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이 사건 홍보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로고는, 왼쪽 부분에 원 테두리 내부에 꽃을 형상화한 문양과 오른쪽 부분의 하단에 'F'의 한글 기재, 상단에 그 한자 기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로고 디자인과 문자의 배치 및 결합은 흔히 볼 수 있는 표현형식으로서 원고만의 독자적인 표현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로고 중 문자 표기 부분은 피고가 유통·판매하는 한우의 특성, 즉 정보를 전달하는 실용적인 기능에 주된 목적이 있고, 원고가 위 문자의 글씨체를 만든 것도 아니며, 그 색상 역시 널리 사용되는 것이다. 설령 미적인 요소가 일부 가미되었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작성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미술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존재가치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③ 별지2 목록 제1항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십장생을 이용한 디자인은 예로부터 있어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십장생 모양을 넣은 것 자체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가 유통·판매하는 상품인 한우를 배치한 형태인 육각형은 기본 도형으로서 일반적인 표현방식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어떠한 창작적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같은 목록 제2항의 이미지는 상단에 이 사건 로고를, 하단에 한우의 부위별 사진을 실은 피고의 유통·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홍보자료인데, 위 사진 자체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촬영 결과물에 해당하고, 그 사진을 기초로 하여 배경을 추가로 넣어 편집한 것으로, 누가 하더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같은 목록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①, ③의 각 이미지는, 이 사건 로고와 함께 피고의 유통·판매 상품의 홍보 문구 혹은 취급점 모집 안내문구, 피고의 유통·판매 상품의 사진 혹은 사업장의 사진을 담은 것인데, 위 사진에 피사체의 선정이나 구도 설정, 기타 촬영방법에 독창적인 특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위 홍보 문구는 피고가 유통·판매하는 상품의 특징이나 그 구성(제사용 상품 혹은 도매용 상품)을 설명한 것으로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이나 설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⑥ 같은 목록 제6항 ②의 이미지는,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원 모양의 도형과 화살표로 표시하고 피고가 직접 생산·유통, 가공, 판매를 진행한다는 것과 위 상품의 품질을 설명하는 문구를 넣은 것으로, 이와 같은 도형의 사용 및 배치는 흔히 사용되던 표현방식이고, 원 도형을 일부 변형하여 화살표와 결합하는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미적 요소를 가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원고의 개성이 반영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⑦ 같은 목록 제7항의 이미지는, 이 사건 로고와 함께 피고의 판매 제품을 설명한 문구를 기재한 금색의 명판 디자인으로, 이는 피고가 유통·판매하는 제품의 광고 및 판매라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는데, 소비자에게 사업장을 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상표 등이 표시된 명판을 게시한 사업장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금색은 장식적·심미적 효과를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색상이며, 이 사건 로고와 홍보문구의 배치 등에 있어서도 원고의 개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이 사건 도안에 대한 저작권재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더해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안에 대한 저작권(복제권·배포권·공중송신권·전시권)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가 2019.경 원고에게 상품권 등록을 위하여 이 사건 로고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저작권 승계(피고 → 원고)'를 조건으로 작업비용 70만 원을 제시하였고, 원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위 의뢰에 응하여 이 사건 도안이 포함된 이 사건 로고 등을 제작·제공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 위 도안¹⁾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에 관한 합의는 위

1) 이 사건 로고 등과 이 사건 홍보물 중 저작물로 인정되는 '이 사건 도안'에 한정하여 그 저작권재산권에 관한 원·피고 사이 약정 및 그 효과를 살펴본다. 이하 같다.



의뢰 내용과 같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에서 정한 '승계'는 그 문언상 '권리 또는 의무의 이전'을 의미하는 점,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피고의 상품표지 및 영업표지로 사용할 상표도안을 제작·공급하는 것이었고, 일반적으로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또는 자기의 영업과 다른 사람의营业을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상품, 사업장, 각종 홍보물 등에 널리 사용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상표로 출원·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 적어도 복제권·배포권·공중송신권·전시권을 보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작업 결과물과 함께 이러한 권리까지 양도하기로 하는 의사에서 '저작권 승계' 규정을 두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저작권은 결제대금 완납시 피고에게 제공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 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해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작업 결과물을 제공받은 이후부터 피고의 사업을 폐업한 2026. 6. 2.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도안을 피고의 상품표지 혹은 영업표지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사업 홍보물 제작을 의뢰받아 이 사건 도안이 포함된 이 사건 홍보물을 제작·제공하면서도, 위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비용 외에 저작물인 이 사건 도안을 사용하는 대가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로고 등과 이 사건 홍보물을 사용한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2026. 6. 17.자 준비서면 1면), ④



원고는, 피고가 추가로 요청한 작업(이 사건 로고가 들어간 제품디자인 제작)도 이 사건 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그 비용이 정산되지 않았으므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19.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로고 등의 원본 파일을 제공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었고(위 추가 작업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로고 등의 결과물 제공 및 그 저작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그 디자인의 포장재를 생산·납품시 그 비용과 함께 디자인 작업 비용을 정산하기로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아 위 추가 작업이 이 사건 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저작권 승계' 관련 정지조건은 이미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는 2025. 11. 20.경 J에 대해 이 사건 로고 등과 이 사건 홍보물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직전인 H일자에서야 비로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도안이 포함된 이 사건 로고에 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그 전까지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안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해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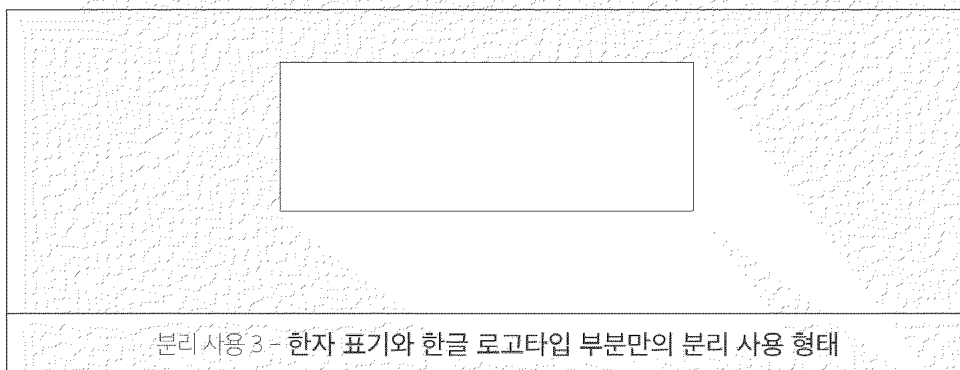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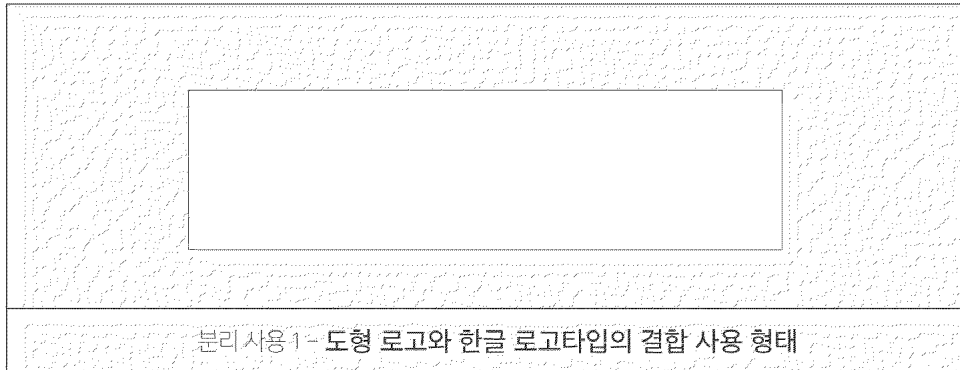
판사 전지은

판사 김수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0

별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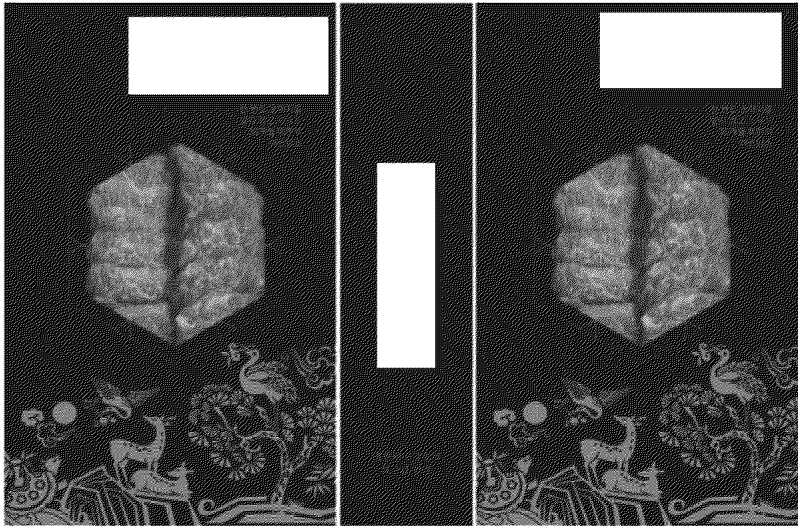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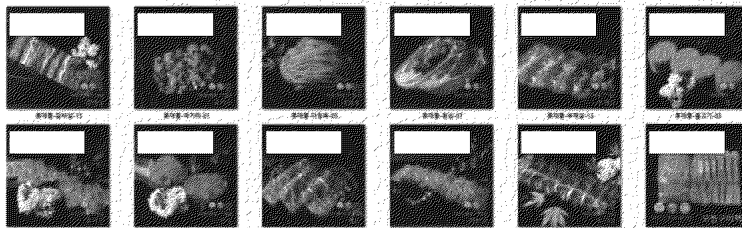
별지2

목 록

1. 십장생 패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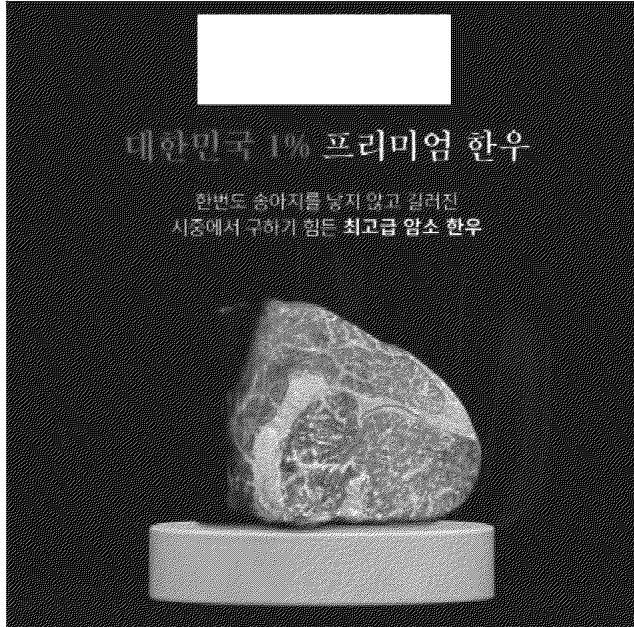
2. K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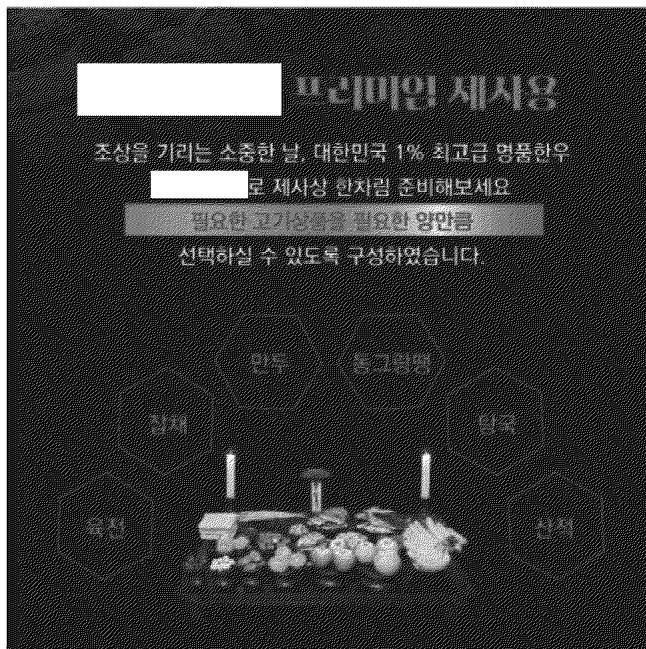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0

3. L 헤더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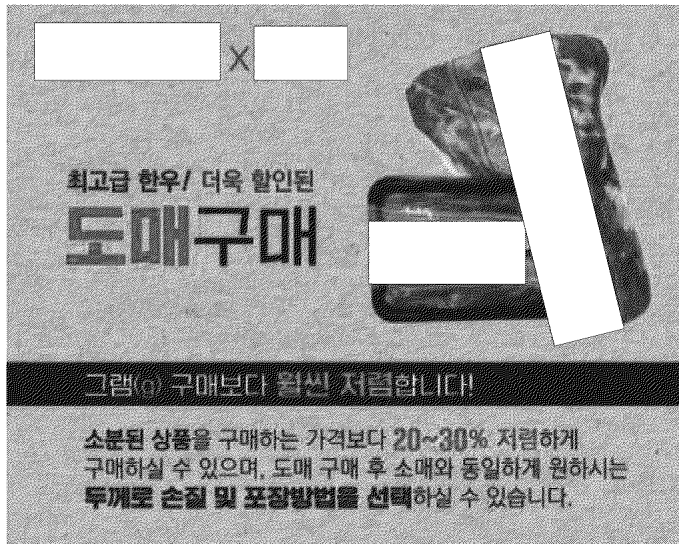
4. 프리미엄 제사용 홍보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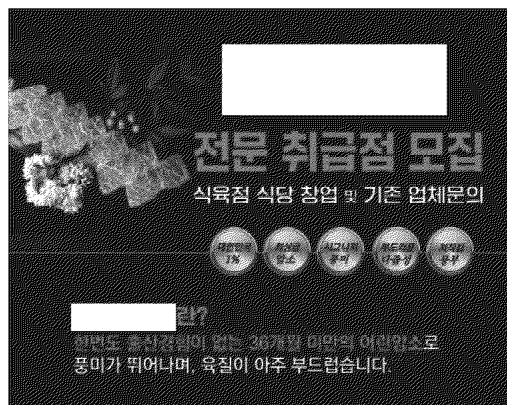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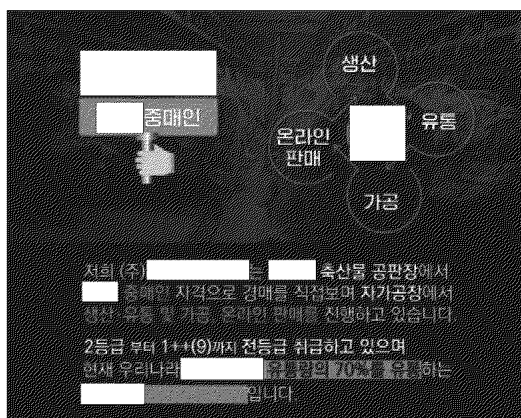
5. 도매상품 홍보 이미지



6. ① 취급점 사업 홍보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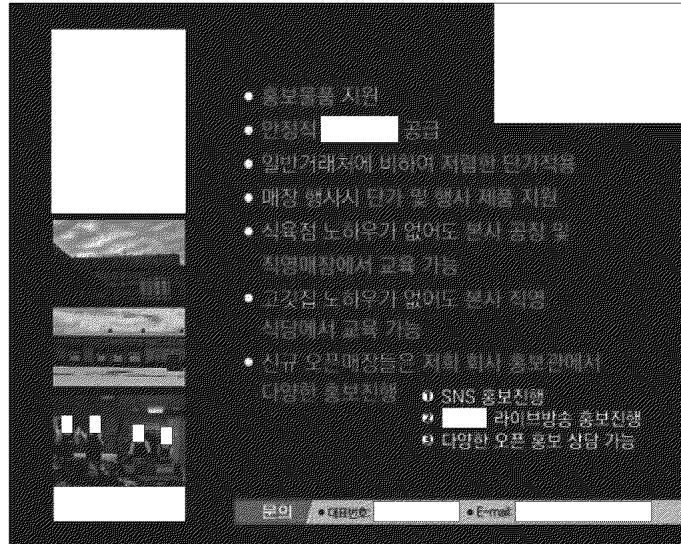
② 취급점 사업 홍보 이미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10

③ 취급점 사업 홍보 이미지



7. M 금속 명패 이미지

